



미국 법무성
시민평등권부



미국 교육성
시민평등권실

의미 있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영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은 공립학교 전체 학생의 9%에 이르고, 공립 학교 4 곳 중 거의 3 곳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964 년의 민권법 표제 6 (표제 6) 및 1974 년의 교육기회 평등법 (EEOA) 에 의거하여, 공립 학교들은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의미 있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미국 교육성 (ED) 및 미국 법무성(DOJ)은 주립 교육 기관들 (SEAs), 공립 교육청들, 공립 학교에게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공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보지는 공동 지침의 개요를 보여주지만, 지침에 있는 모든 이슈들을 모두 다루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정보지는 교육청들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침은 주립 교육 기관들도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영어 미숙련 (LEP) 학부모들에 대하여 법적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ellresources.html> 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학습자일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학생들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 교육청은 영어 학습자일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학생의 언어 배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영어가 주된 언어 혹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시에 가정 언어 설문조사를 합니다.
- 그런 다음에, 교육청은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실제로 그런지를 영어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평가하는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영어 학습자 학생들에게 언어 지원 제공

- 영어 학습자 학생들은 합리적인 시간 안에 영어에 능숙해 지고 표준 교육 프로그램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교육청은 영어 학습자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단 해당 프로그램이 이론적으로 건설하고 그 실행이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의 인력 충원 및 지원

- 영어 학습자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훌륭한 자격을 갖춘 교사, 지원 직원, 적절한 교육 자료를 포함하여, 충분한 자원을 갖춘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교육청은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영어 학습 교사, 직원, 관리자를 갖추어야 하고 필요하면 보충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교과 및 교과외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 있는 액세스 제공

- 영어 학습 학생들은 진급 및 졸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년 수준의 교육과정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영어 학습 학생들은 다음 과정 혹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원 이전 과정, 매그넷, 영재 및 재능 프로그램, 직업 및 기술 교육, 예술 및 운동 프로그램; 고급 학습 과정 (AP) 및 국제 학력 평가 (IB) 과정; 클럽들; 우등생 단체들.

영어 학습 학생의 불필요한 분리 방지

- 교육청은 일반적으로 출신 국가나 영어 학습 상태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분리시키면 안됩니다. 비록 특정 영어 학습 프로그램은 영어 학습 학생들이 하루 중 제한된 부분이나 제한된 기간 동안 별도의 수업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교육청과 주는 프로그램의 명시적 교육 목표에 따라 분리가 최소화되도록 선택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 교육 및 이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어 학습 학생을 평가하기

- 장애가 있는 영어 학습 학생들은, 그들이 연방 법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언어 지원과 장애 관련 서비스 둘 다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장애인교육법 (IDEA) 혹은 1973년 재활법 504 절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학생들처럼,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영어 학습 학생들은 특수 교육 및 장애 관련 서비스를 위해 시의적절하게 발견되고 파악되고 평가되어야만 합니다.

- 영어 학습 학생을 영어 미숙 때문에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잘못 파악하지 않기 위해, 영어 학습 학생들은 학생의 필요와 언어 실력에 기초하여 적절한 언어로 평가 받아야 합니다.
- 특수 교육이나 장애 관련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계획이 장애가 있는 영어 학습 학생의 언어 관련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을 설계하는 팀에 학생의 언어적 필요를 잘 아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어 학습 프로그램 또는 특정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 모든 영어 학습 학생들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기 자녀를 교육청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나 영어 학습 프로그램 안의 특정 영어 학습 서비스에서 빼 내셔도 됩니다.
- 교육청은 어떤 이유로도 학부모에게 탈퇴를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학부모는 자녀들의 권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영어 학습 서비스의 범위, 그러한 서비스의 혜택에 대해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부모가 자녀의 탈퇴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적절하게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 교육청은 탈퇴한 영어 학습 학생들에게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진보를 모니터링하고, 만약 학생이 힘들어 한다면 영어 학습 서비스를 다시 제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및 영어 학습 프로그램에서 영어 학습 학생들을 내보내기

- 모든 영어 학습 학생들이 영어에 숙달하고 내용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상당 기간 동안 그들의 진보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영어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평가하는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어 능력 (ELP) 평가를 매년 시행해야 하며 이 평가는 주의 영어 능력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습 학생은 영어 능력 평가의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에서 영어 숙달을 보여줄 때까지는, 학생을 영어 학습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상태에서 내보내지면 안됩니다.



- 교육청은 다음 사항들에 대해 영어 학습 학생이었던 학생의 학업 진보를 최소 2년 동안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학생을 너무 일찍 프로그램에서 내보낸 것이 아닌지; 영어 학습 프로그램 때문에 초래된 학습 부족이 다 보충이 되었는지; 영어 학습 학생이었던 적이 없는 학생들(영어 학습 전력이 없는 친구들)과 비슷한 정도로 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미 있게 참여하고 있는지.

교육청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하기

- 영어 학습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 능력을 습득하고 영어 학습 전력이 없는 친구들과 비슷한 정도로 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미 있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 교육청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영어 학습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모니터링하고 영어 학습 전력이 없는 친구들과 일정 기간에 걸쳐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 교육청은 현재와 과거의 영어 학습 학생의 학업 성취를 종합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시의적절하게 수정하기 위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에 걸쳐 평가해야만 합니다.

영어 미숙련 학부모들과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 영어 미숙련 학부모들은 번역된 자료나 통역사 제공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권리가 있고, 영어를 잘 하는 부모들에게 알리는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영어 미숙련 학부모 및 보호자의 시민평등권과 영어 학습 학생의 부모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의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dcl-factsheet-lep-parents-201501-korean.pdf> 을 참조하십시오.

* * * * *



미국 법무성
시민평등권부



미국 교육성
시민평등권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추가 정보를 원하시거나, 어떤 학교가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 교육성의 시민평등권실 웹사이트인 www.ed.gov/ocr 을 방문하시거나 (800) 421 3481 (TDD: 800 877 8339) 또는 ocr@ed.gov 로 시민평등권실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howto-korean.pdf> 을 방문하십시오.
- 미국 법무성 시민 평등권 부서의 웹사이트, www.justice.gov/crt/about/edu/를 방문하거나 (877) 292-3804 또는 education@usdoj.gov 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justice.gov/crt/complaint/#three 를 방문하십시오.
- 영어학습 학생 및 영어 미숙련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의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추가적인 시민평등권실의 안내는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ellresources.html> 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